

# 전기방식위원회 규정

제정 1997년 06월 13일

개정 2006년 10월 12일

개정 2019년 09월 21일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전기방식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이하 “학회” 라고 칭함) 정관 제4조(사업) 및, 제7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본회의 사업 중 전기방식 기술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및 대외 기술자문 등을 담당하는 전기방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임무)

전기방식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방식과 관련한 조사, 연구 사업
2. 전기방식관련 용어의 제정
3. 학계 및 산업체 관련 인력의 교육
4. 대외 기술자문(조사, 설계, 감리, 시험, 법규)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제4조 (위원회 구성)

1. 전기방식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본 위원회 활동에 관심있는 학회 회원 및 회원사의 회원(특별회원 임직원에 한함)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 위원장은 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의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제3조 각항의 사업을 기획·실시한다.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업무 수행에 있어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 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 **제8조 (소위원회 구성)**

기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업무별 또는 지역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 **부칙**

1. (제정)본 규정은 1997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본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